2024. 2. 5.(수) 09:30
제3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남양주시의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윤 선 기

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○ 발의년월일 : 2025.01.24.

○ 발 의 자 : 이진환 의원 등 8인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남양주시의정회 운영비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정누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의정회 운영비용 지원 제한사항 규정 신설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5.1.24.~ 1.31.(7일간)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윤선기)

○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[부패영향분석과-1890(2024.4.30.)]에 따라 의정회 사업비 등의 명시적 지원비용 외에 운영비용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의정회 지원 대상의 명확화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임 :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(안) 1부.

붙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(안)

86개 시·군 지방의회 자치법규

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

국민권익위원회

7. 의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

평가대상	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등

■ 「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」

제3조(지원사업)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
2.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
3.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
4.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
5.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,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■ 「논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」

제2조(보조금 지원) 논산시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평가기준 : 재량규정의 구체성 · 객관성, 재정누수 가능성

평가항목	주요 검토 내용
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	재량권자, 재량범위, 재량기준,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·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
재정누수 가능성	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,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

□ 현황

○ 경기 성남시의회 등 24개 시·군의회에서 **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**를 제정·시행

- 의정동우회가 시정발전·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한 **연구개발, 각종 제도개선 건의 등의 사업**을 할 경우 **사업비 지원**이 가능

< 관계 법령 >

■「**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**」

제6조(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,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)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문제점

①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**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** 하고 있으나

- 경기 하남시의회 등은 의정동우회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**지양하도록 규정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**하여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둠

□ 개선방안

① 경기 하남시의회 등은 상황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**'운영비 지원 지양' 등 문구를 삭제하거나 운영비 지원 금지를 조례에 명시**<이하 생략>

붙임1 관계법령

☑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,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**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)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붙임2 **비용추계 관련 자료**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○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